

미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미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산림 1,456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SFI 인증서 (산림 2,428만ha가 SFI 인증을 받음) - ATFS 인증서 (산림 890만ha가 ATFS 인증을 받음)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미국은 08년부터 레이시법(U.S. Lacey Act)을 운영 중임. 미국 연방, 주, 또는 부족 법령(및 외국 법령)에 위반하여 벌채, 점유, 운송 또는 판매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교역을 감지하며, 상기 법령에 위반하여 벌채된 목재를 거래하는 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국 가이드라인

미국의 가이드라인 소개

미국의 산림 소유 및 관리는 대단히 탈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50개 주는 광범위한 법령, 규정, 정책수단, 모범관리실무, 역량배양사업을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집중화된 산림관리체계 때문에 합법성 검증을 위한 일체의 중앙집중식 체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합법성을 표시하는 단일한 국가 차원의 정부 발급 문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관리 책임이 있는 50개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요건이 산림관리 및 목재수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정 준수와 관련된 문서(그러한 문서가 존재할 경우)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합니다.

미국 산림의 대부분은 사유림입니다. 미국의 연방 법령체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며, 미국 시민과 기업은 재산권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종류의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및 산림자산에 대한 권리의 사용과 접근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및 사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재생산자들은 산림관리가 생산자의 명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경쟁이 치열한 상업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관리는 산림자산의 투자자본수익률(RoI) 최대화에 필수적입니다. 탈집중화된 미국 산림관리시스템은 시장 주도의 목재품질요건에 매우 잘 맞습니다.

2008년에 일부 미국 목재수출품의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확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비정부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¹⁾ 본 가이드라인의 문언에 반영된 이 연구의 결론은: (1) “불법 목재가 미국의 목재 공급망에 유입될 위험은 1% 미만이다. 이는 분명하고 전적으로 집행되는 재산권, 다세대 가족 산림소유권,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강력한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다; (2) 국가 및 주의 안전망 및 불법행위와 잘못된 임업방식을 다루는 규정과 제도를 고려할 때 추적가능성, 독립적 관리연속성 및/또는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통제된 목재인증에 대한 요구는 미국의 목재 제품 조달을 위한 핵심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 연구는 본 가이드라인의 첨부 부분에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역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수입목재에 대한 합법성 보증체계는 아니지만 2008년에 개정된 미국 레이시법(U.S. Lacey Act)이 있습니다. 레이시법은 미국 연방, 주, 또는 부족 법령(및 외국 법령)에 위반하여 벌채, 점유, 운송, 또는 판매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교역을 금지하며, 상기 법령에 위반하여 벌채된 목재를 거래하는 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

- 미국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는 세 가지 산림 소유형태가 있습니다:

- (1) 국유림
- (2) 공유림(公有林)(주/부족/군(county)/지방자치단체 소유)
- (3) 사유림

산림 소유형태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²⁾:

1) Seneca Creek Associates, LLC, Assessment of Lawful Harvesting & Sustainability of U.S. Hardwood Exports, 2008
 2) Oswald, et. Al. 2014

소유형태	비율	면적(헥타)
국유림	31%	96,505,000 ha
공유림(주, 부족, 군, 지방자치단체 소유)	11%	33,467,000 ha, 이 중에서 ▪ 7,527,153 ha 는 부족 소유
사유림	58%	180,113,000 ha, 이 중에서 ▪ 민간 법인 소유: 59,678,000 ha ▪ 민간 비법인 소유: 120,434,000 ha
합계:	100%	310,085,000 ha

• 미국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미국의 어떤 토지는 구체적으로 산림/생산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요존림(reserved forest)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지가 복합용도 산림으로 취급됩니다. 복합용도 산림은 생산, 보호, 여가활동, 관상(觀賞), 산림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되고 이용됩니다.(US FS-1036, August 2014).

산림의 종류	면적(헥타)	세부 내용
삼림(Timberland)	211,000,000 ha	생산 용도
요존림(Reserved Forests)	30,000,000 ha	토지가 목재수확을 위하여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벌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³⁾ 이러한 요존림에는 국립공원, 보존 또는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연방 및 주(州)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기타 산림	76,000,000 ha	임야, 관목림, 도시림. 이러한

		산림의 주 목적은 목재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기 위하여 간혹 벌채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

출처: Forest Inventory and Analysis Program, 2012 data

산림 인벤토리 및 분석사업에 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고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국가 산림 인벤토리와 분석체계 중 하나인 미국 산림청의 산림 인벤토리 및 분석사업(FIA)은 1930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사명은 “미국의 산림과 초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의 현재 및 장래 상태와 요구에 관한 포괄적인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FIA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탐지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주, 업계, 학계, 민간 토지소유자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5년마다 각 주의 산림의 건강상태와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발표합니다.

또한 FIA 사업은 미국 각 주에서 원목(round wood)의 산업적 및 비 산업적 이용을 추정하기 위한 목재제품산출(TPO)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각 주의 제재소 위치, 규모, 종류, 그리고 반입되는 원목을 수종과 생산 지별로 파악합니다. 또한 일차 가공 중에 나오는 목재 잔류물의 처분, 종류, 양을 파악합니다. FIA는 TPO를 인벤토리 물량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벌채활용조사를 실시합니다.

- 미국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3) 이러한 유보산림의 현재 면적은 국립 산림 무도로(無道路) 구역(IUCN VI급으로 취급) 등 일부 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도로 구역(약 1,300만 헥타)은 현재 '삼림'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벤토리가 작성되면 이러한 토지를 적절한 카테고리 분류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될 것입니다.

미국 산림관리체계

미국에서는 다양한 연방, 주, 지방정부, 부족의 법령, 규정, 정책수단, 역량 배양사업, 모범관리실무를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다양성과 민주적 토대는 미국의 관리체계와 산림정책 및 관리의 근본적 특징입니다.

미국 산림의 절반 이상이 1천만 명이 넘는 민간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입니다. 이러한 산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평균면적 10 ha 미만의 ‘가족 및 개인’ 소유 산림입니다.⁴⁾ 이 소유주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서, 산림을 소유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은 미국인들을 위하여 보존, 생산, 여가활동 등 여러 용도를 위하여 공공의 토지를 관리합니다.

부족들은 Bureau of Indian Affairs과 협의하여 위와 비슷한 용도, 특히 부족민들을 위한 문화 용도로 자신의 산림을 관리합니다.

국유림

다수의 연방정부기관이 국유림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의 연방정부기관이 국유림 관리에 관한 법령의 시행과 집행에 가장 관련된 기관입니다: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rest Service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Fish and Wildlife Service
- DOI Bureau of Land Management
- DOI National Park Service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등 기타 정부기관

공유림 및 사유림

4) Seneca Creek Associates study, 2008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모든 산림을 규제하는 연방 법령이 몇 가지 있지만, 별채 관련 법령은 주로 주 차원에서 입법, 시행, 집행됩니다. 따라서 주 차원의 산림 및 환경 규제당국은 해당 주의 임업활동 규제와 별채의 합법성 판단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00년 현재 1,453개의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부, 국, 과, 위원회)가 비 국유림의 상태(이용, 관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Ellefson et al., 2001 and 2002)

이 중에서 약 540개의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가 비 국유림에서의 임업활동 규제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 37개가 산림 관련 규제기능(허가 발급, 규정 집행, 점유 허가 등)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나머지 500개 정도의 기관 또는 부서는 비 국유림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사업책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규제업무를 수행합니다(예: 농약 및 살충제 저감, 자원보호[화재, 병충해], 수질오염 관리, 대기오염 관리, 산림 및 야생생물 관리, 광산 및 광물채취, 수역 및 습지 관리, 폐기물 관리, 공공보건사업).

부족립

미국 연방 법령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부족은 미국과 정부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 권한, 제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자금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부족은 일정한 원시적 자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일정한 연방정부의 혜택과 서비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567개의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및 부락이 있습니다.

부족은 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포기된 권리, 연방 의회가 명시적으로 소멸시킨 권리, 기존의 연방 법령에 구속되는 것 또는 중첩되는 국가 정책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므로 부족은 자치정부를 조직할 권리; 민사 및 형사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 세금을 징수할 권리; 구성원의

자격(부족원)을 정하고 판정할 권리; 관할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발급하고 규제할 권리; 용도구역을 정할 권리; 부족의 토지에서 사람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부족 자치권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지만, 각주에 적용되는 일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이나 주는 전쟁, 외교, 화폐 제조 및 발행의 권리는 없습니다.

‘연방 원주민 위탁 책임’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미국측의 위탁적 의무이자 부족의 조약권, 토지, 자산, 자원을 보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과 부락에 관한 연방법률의 규정을 실행할 의무입니다.⁵⁾

원주민 자치구역 내 토지의 소유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 토지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부족 위탁토지(tribal trust land), 배정된 위탁토지(allotted trust land), 비위탁토지(fee land)입니다. 대부분은 부족이 사용하도록 미국정부가 위탁 형태로 토지를 보유하는 첫 번째 형태에 속합니다. 미국정부는 법적 권원(legal title)을 보유하고, 부족은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부족이 공유하며 부족정부가 관리합니다.

5) <http://www.bia.gov/FAQs/index.htm>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미국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미국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미국에는 벌채와 관련된 단일한/보편적 형태의 승인 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산림관리체계의 탈집중화된 체계와 다양한 소유형태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채와 관련된 단일화/보편적 형태의 문서는 없습니다.

1) 국유림의 벌채

많은 법령 및 정책이 국유림의 벌채를 관장하며, 그 중 주요 법령은 국가산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MFA), 연방 토지정책및관리법(Federal Land Policy & Management Act, FLPMA),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Clean Water Act, CWA, 국가 임도탐방로법(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환경영향분석, 제안된 벌채계획의 대안, 공공의견 청취기간이 필요합니다.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누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당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방 토지관리기관 직원은 국유림의 벌채 및 기타 행위를 모니터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방정부기관에 연방 환경법령 준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산품의 복잡성과 가치/판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허가/계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U.S. Forest Service Lands:
<http://www.fs.fed.us/forestmanagement/products/contracts.shtml>

Bureau of Land Management Lands:

<https://www.blm.gov/programs/natural-resources/forests-and-woodlands/forest-product-permits>

<https://www.blm.gov/programs/natural-resources/forests-and-woodlands/stewardship-contracting>

국유림의 별채에 적용되는 연방 법령:

-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 연방정부기관이 제안된 행위의 환경 및 연관된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산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1976): 미국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계획업무 및 국유림에서의 산림관리활동을 규율하는 여러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연방 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1976): 미국 토지관리청(BLM)의 관리책임을 규정하면서 특히 복합용도, 지속가능한 산출, 환경보호를 공공토지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조직법(Organic Act of 1916): 국립공원과 산의 보존을 사명으로 하는 국립공원 관리자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근거 법률입니다.
- 산림자원보존 및 부족구호법(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1990): 서경 100도선 서부의 국유림에서 별채된

목재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서경 100도선 서부의 주 및 기타 공유지(원주민 토지 제외)에서 벌채된 목재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주의 국유림에서 벌채된 미가공 원목(round wood)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 부족림 보호법(Tribal Forest Protection Act (TFPA) 2004): 원주민 위탁 토지와 경계를 이루거나 인접한 산림청 또는 토지관리청(BLM) 관리 토지에서 유래한 화재, 질병,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원주민 위탁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원주민 부족이 제안한 관리 계약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특별히 고려할 권한을 농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주 소유의 공유림과 사유림에서의 벌채

미국의 50개 주는 각 주에 있는 비국유림의 산림관리, 벌목, 수출, 세금/로열티, 토지에 관련된 권리, 목재제품의 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마다 자체 법령과 요건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떤 주에는 지방 법령과 군(county) 법령도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 벌채 또는 목재를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와 부속 문서는 벌채와 목재제품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의 규정과 법령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산 또는 거래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규제는 주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상당히 엄격한 의무적 산림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어떤 주는 자발적인 모범관리실무에 의존합니다. 과세 및 재무 관련규정도 주마다 달라서, 어떤 주는 연 단위의 평가 대신(어떤 경우에는 평가에 추가하여) 벌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Seneca 조사)

산림관리제도와 같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책임성 있는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기술적 지원, 금전적 지원,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재가 수확된 주(들) 및/또는 사업이 운영되는 주를 파악하고, 해당 주의 산림당국 및/또는 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각 주 산림자원기관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 [Alabama](#)
- [Alask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
- [Delaware](#)
- [Florida](#)
- [Georgia](#)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

비-산림전용 연방 법령(모든 주와 소유형태에 적용)

주와 지방 법령 외에도 50개 주 전부와 모든 토지 소유형태에 적용되는 연방 법령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1973): 멸종위기종법(ESA)의 목적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동법에 따라 생물종은 멸종위기 또는 위협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endangered)는 생물종이 그 서식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 (threatened)은 생물종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종은 해충을 제외하고 멸종위기 또는 위협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미국 ‘Fish and Wildlife Service’ 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 기관의 관리권한과 (Division of Management Authority)와 과학권한과(Division of Scientific Authority)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CITES는 각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법령 및 규정의 변화, 법 집행, 인허가, 홍보, 행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ws.gov/international/cites/>

- Clean Water Act, 1972: 맑은 물과 습지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 Clean Air Act, 1973: 연방정부기관과 주에 사전입화(prescribed burning) 및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대기 질과 시계(視界)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안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1972)(CZMA): 국가의 해안 마을과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업은 비점(non-point) 오염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 주는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임업 모범관리실무(BMP)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연방 살충제, 살균제, 쥐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해충방제를 위한 것이든 식생 관리를 위한 것이든 임분(forest stand)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Seneca)
-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미국으로의 산림 및 식물 해충 반입, 또는 미국 내에서의 산림 및 식물 해충 전파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3) 부족림에서의 별채

- 국가 원주민부족림 자원관리법(National Indian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ct, NIFRMA, 1990) - 공법 101-630 제3장(Title III of Public Law 101-630)(1990)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원주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위탁행정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과 목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무부-원주민청-원주민 산림관리 편람 및 지침: 계약, 인허가, 산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원주민 산림 위탁의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와 절차를 제공합니다.
<http://www.bia.gov/WhatWeDo/Knowledge/Directives/Handbooks/>
- 부족간 목재위원회(Intertribal Timber Council)는 그 웹사이트에서 원주민 산림 및 천연자원 국가 목록(Indian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National Directory)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표합니다.
- 국가 원주민부족림 자원관리법(제3111조)은 내무부장관에게 해당 원주민 부족과 협의하여 원주민 산림자원의 현황 및 그 관리 실태를 정기적,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된 후 1993, 2003, 2013년, 총 세 차례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미국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는 매우 탈집중화된 산림관리체계로 인하여 합법성 증명을 위한 하나의 중앙집중식 체계가 없고 합법성을 표시하는 단일한 국가 차원의 정부 발급 문서도 없습니다. 판매계약서, 벌채허가서, 토지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문서 - 이 모두가 합법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공급망을 추적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자사의 제품 공급망에 관하여 관련 인증체계에 의한 관리연속성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사용이 그 사용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업 종사자는 해당 분야에서 영업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능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관리 맥락에서 임야는 제삼자에 의하여 표준과 대비한 감사를 받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FM)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 시스템 중 많은 시스템에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 요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인증(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제삼자 산림 인증은 긍정적인 민간분야의 혁신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검증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많은 인증체계를 감독하고 검증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어느 하나의 인증체계를 다른 인증체계보다 선호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림인증은 주 및/또는 개별 산림 소유주가 독자적인 재량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Vogel 2008, Moore et al. 2012). 어떤 미국의 주와 개별 토지 소유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인증받아 왔습니다. 기업 소유의 대규모 산림은 인증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3대 산림인증체계가 있습니다. 약 20%의 미국 임야가 현재 이 중 하나의 체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인증받은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 지속가능한 산림 이니셔티브(SFI). 미국의 산림 약 6천만 에이커가 SFI 인증을 받았습니다. SFI는 주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 SFI는 연례 사업보고서와 관련 문서를 통하여 북미에서 총 2억 8천만 에이커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 중 미국의 산림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제지연합(AF&PA)는 미국에서 총 6천만 에이커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2016)).
- 산림 스튜어드십 위원회(FSC). 현재 미국에서 약 3,600만 에이커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하여 FSC 인증을 받았습니다. FSC는 미국 기업들에게 CoC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국 양묘장 시스템(ATFS). ATFS는 미국의 소규모 양묘장과 토지 소유주들에게 인증과 CoC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약 2,200만 에이커가 ATFS 인증을 받았습니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미국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는 국내의 목재 공급망을 추적하는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중앙집중식 합법성 보증제도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사의 제품 공급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관련 인증제도에 의한 관리연속성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미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미국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기타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미국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미국 레이시법(U.S. Lacey Act)(2008년에 개정): 레이시법(16 U.S.C. Section 3371 et seq.)은 연방 법령과 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외국정부의 법령에 위반하여 수확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은 누구든지 미국, 미국의 주, 미국의 원주민 부족, 또는 식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식물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외국의 어떠한 법령, 조약,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확, 점유, 운송, 또는 판매된 일체의 식물 또는 식물제품(일체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 포함)을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수령, 획득 또는 구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의 금지조항(16 U.S.C. Section 3372)은 (1) 식물의 절취; (2) 공원, 요존림, 또는 기타 공식적인 보호구역의 식물 채취; (3) 공식적으로 지정된 구역의 식물 채취; 또는 (4) 필요한 인가가 없는 상태의, 또는 인가에 반하는 식물 채취를 규제하는 법률에 적용됩니다. 이 금지조항은 식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로열티, 세금, 또는 입목벌채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는 식물의 수출이나 운송을 규율하는 어떠한 주의 법령이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른 일체의 한계를 위반하여 벌채, 점유, 운송, 또는 판매된 식물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레이시법은 누구든지 (1) 일체의 외국에서 수입, 수출, 판매, 구매, 또는 수령 또는 (2) 주(州)간 거래 또는 국제무역에서 운송되었거나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식물 또는 식물제품에 대한 허위의 기록 또는 라벨 또는

허위의 식별표시를 제작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U.S.C. Section 3372(d)). 미국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포함하여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식물제품의 학명, (2) 수입가액, (3) 식물의 수량, 및 (4) 수확된 국가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신고 요건은 아직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신고요건이 적용되는 식물제품의 종류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planthealth/import-information/SA_Lacey_Act

레이시법에 관한 추가 정보도 상기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불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한

연구(<https://www.illegal-logging.info/sites/default/files/uploads/AHECRISKASSESSMENT.pdf>)

미국 활엽수재 수출품의 합법적 수확과 지속가능성 평가

2008년에 미국 활엽수재(hardwood) 생산과 관련된 위험의 수준에 관한 포괄적 연구에서 “불법 목재가 미국 활엽수재 공급망에 유입될 위험은 1% 미만이다. 이는 분명하고 완전하게 집행되는 재산권, 다세대 가족 산림 소유권,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강력한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효과 때문” 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불법행위와 잘못된 임업방식을 다루는 국가 및 주의 규정과 제도의 안전망을 고려할 때, 추적가능성, 독립적인 관리연속성 및/또는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통제되는 목재인증에 대한 요구는 미국의 활엽수재 제품의 조달에서 핵심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활엽수재 생산에 관련된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위협의 수준 파악에 유용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세네카 크릭 어소시에이츠(Seneca Creek Associates)가 수행하고, 미국 활엽수재 수출연합(AHEC)이 지원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목재수출이 불법적인 출처에서 나올 위험이 매우 작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법적정보연구원(Legal Information Institute)

법적정보연구원은 코넬대학교 로스쿨에 위치한 소규모 연구, 엔지니어링, 및 편집 집단으로서 누구나 자신을 규율하는 법률을 비용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목재보호 관련 법률의 목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6/chapter-4>

산림 합법성 이니셔티브(FLI)의 자료

산림 합법성 이니셔티브는 불법 산림제품 공급의 지원을 통한 불법 벌채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서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FLI의 웹사이트에는 풍부한 정보와 모범사례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원연구소는 국제 목재제품연합(IWPA)과 협력하여 미국 산림제품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목재 교역 준법 교육 및 상당한 주의 수단(Wood Trade Compliance Training and Due Diligence Tools)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레이시법 준수와 관련한 미국 수입업자들의 어려움, 전략, 자원을 파악합니다.

업계단체의 자료

미국 활엽수재 수출연합(AHEC): 미국 활엽수재의 구매자들이 EU 목재규정 및 이와 유사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하여 AHEC는 미국 활엽수재 수출업자

들이 세계 모든 시장에 배송되는 제품의 개별 탁송에 대하여 미국 활엽수재 환경 프로파일(AHEP)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벌채 관련 합법성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건축법령 및 식물위생 기준, 규정, 인증에 자료를 제공하는 두 개의 단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전국 활엽수재 연합(NHLA): 전국 활엽수재 연합은 미국의 활엽수재의 검량과 검사를 위한 일관된 등급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18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목재표준위원회(ALSC): 미국목재표준위원회(ALSC)는 목재 생산자, 유통업자, 사용자, 소비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미국 침엽수재 표준(자발적 제품표준 20)을 위한 상설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PS 20에 따라 동 제도 하에서 생산된 목재의 등급 표시를 위한 인증제도를 관리합니다. ALS 시스템은 미국 전역에서 건축법령에 의한 목재 및 목재의 설계값 채택을 위한 기초도 제공합니다.